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8. 2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11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규정(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구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프로그램 개발 등 보조금 지원 등(안 제5조의2)
- 보조금 지원 등(안 제6조)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안 제6조의2)
- 정산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정진)

- 본 개정조례안은
 -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6조의2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02
------------	-----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찬 성 자: 차인영, 이순우, 우경란
의원(3인)

1. 제안이유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구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프로그램 개발 등 보조금 지원 등(안 제5조의2)

라. 보조금 지원 등(안 제6조)

마.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안 제6조의2)

바. 정산 등(안 제7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8. 8. ~ 2023. 8. 12.):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을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로,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를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8조제2항”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제출받은 정산서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u>영등포구에</u>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u> ----- -----. 2. (현행과 같음)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u>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u>
제3조(지원대상)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u>	제3조(지원대상) <u>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u>
제4조(구의 책무)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u>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u>구청장</u> ----- ----- ----- ----- -----.
제5조의2(프로그램 개발 등) ①	제5조의2(프로그램 개발 등) ① -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설>

-----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 등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 받은 경로
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
회 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

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
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
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
야 한다.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 받은 경로
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
회 영등포구지회에 정산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제출받은 정산서를 확인하고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규정에 위반되는 경
우 제8조제2항--.